

장애인도 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할인 예매 가능

-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 -
- 장애인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의 본인정보 활용 권한 인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사업으로 3월 10일에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예매 서비스」가 개통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도 에버랜드 이용권 구매 시에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민간개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라면서, “장애인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조문 대비표

2. 질의응답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4-202-3280)
		담당자	사무관	두유림 (044-202-3299)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책임자	과 장	박민식 (044-205-2721)
		담당자	주무관	황태산 (044-205-2724)
담당 부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책임자	부 장	이정학 (02-6360-6401)
		담당자	과 장	배설희 (02-6360-6404)



개정 전	개정 후
<p>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신설></p>	<p>제17조의2(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 복지서비스(이하 “감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또는 기관·법인·단체의 내부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감면등을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2. 장애인에 대한 감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1호의 기관·법인·단체와 협약 등을 맺고 요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 기관·법인·단체로 하여금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기관·법인·단체에 해당 장애인에 대한 감면등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기관·법인·단체는 미리 장애인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감면등의 제공 내역 및 동意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생략) <신설></p>	<p>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및 감면등의 제공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1.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은 몇 %인가요?

- 에버랜드 이용권의 장애인 할인은 40%입니다.
- 장애인이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에버랜드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장애인정보 확인 후 이용권을 예약하는 경우 정상가격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번 장애인 할인 예약 시스템 개통은 '에버랜드' 외에 '캐리비안 베이'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 네, 적용됩니다. 다만, 캐리비안 베이는 3.3일부터 4.17일까지 휴장 기간이므로, 4월 18일 개장에 맞춰 에버랜드와 동일하게 장애인 할인예약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 ※ 캐리비안 장애인 할인을 25% 적용

3. 앞으로 민간개방 확대 계획이 있나요?

- 영화관·공연장·여가시설 등 장애인 할인을 제공하는 사업 분야에 이번 민간개방에 따른 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수요기관(민간사업자)이 민간개방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참여기업 공모」에 응모(신청)하면, 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용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 시스템 연계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 민간서비스 활용을 위한 전자적 대민서비스제공 등에 관한 규정